

1. 의결주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적 등급제가 아닌 ‘에너지 사용량 등급’ 도식을 삭제하고 대체 도식을 신설하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건축물 에너지사용량등급 표현 도식을 삭제하고, 지역별(시·도) 동일 면적 구간의 표준에너지 사용량 대비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비율 표기 도식을 신설하는 등 서식을 간소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 공동주택 [] 업무시설

건 축 물 현 황	건축물명		준공연도
	주 소		
	연면적/전용면적	m ² / m ²	주 용 도

건축물에너지 관련 인증 취득현황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1 ⁺⁺⁺ ~7등급)	인증등급	1차에너지 소요량	kWh/m ²
	유효기간 00.00.00~00.00.00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1~5등급)	인증등급	에 너 지 자 립 률	%
	유효기간 00.00.00~00.00.0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정보(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

** 건축물 자체의 물리적 성능을 정량 평가한 '1차에너지소요량'과 실제 사용환경에 따라 변동되는 '에너지사용량'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단위면적 당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	열 (a)	kWh/m ² · 년	온실가스 배출량	kg/m ² · 년
	전 기 (b)	kWh/m ² · 년		
	합 계 (a+b)	kWh/m ² · 년		



해당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열+전기)은 지역별(시·도) 동일 면적 구간의
표준에너지사용량 대비 00%(열 00%, 전기 00%)입니다.

※ 우리집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은 매해 4월에 업데이트되며, 전년도에 사용한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CI

운영기관 CI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부 칙

이 규칙은 즉시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연 락 처

(044) 201 - 4091